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69
----------	-------

발의연월일 : 2025. 11. 3.

발 의 자 : 이정현 · 박홍배 · 이용우
김우영 · 김 현 · 이해민
윤준병 · 김태년 · 한민수
조인철 · 박선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 전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함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연인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적 강요는 일반적인 폭행·협박과 달리 관계의 지속성 및 심리적 종속 구조로 인해 피해가 은폐되거나 장기화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의 확대가 지적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등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친밀한 관계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2.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3. 관계 회복 또는 관계 종료를 위한 전문 상담
4. 그 밖에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상담소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친밀한 관계성폭력 전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서 “친밀한 관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상호 간에 애정을 기반으로 합의한 교제 관계이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것
2. 3개월 이상 지속된 관계이거나 그 기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동거, 정기적 만남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관계일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성폭력범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3조의3(친밀한 관계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u> <u>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u> <u>1.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u> <u>2.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u> <u>3. 관계 회복 또는 관계 종료를 위한 전문 상담</u> <u>4. 그 밖에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u> <u>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방지</u>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상담소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친밀한 관계성폭력 전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서 “친밀한 관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상호 간에 애정을 기반으로 합의한 교제 관계이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것

2. 3개월 이상 지속된 관계이거나 그 기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동거, 정기적 만남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관계

일 것